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39호 2015. 9. 21. (월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6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98차) 2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765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4
- 하동군 공고 제2015-773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9
- 하동군 공고 제2015-783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하동군 공고 제2015-784호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3
- 하동군 공고 제2015-786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변경)공고(상장암천) 35
- 하동군 공고 제2015-787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변경)공고(대송천) 43
- 하동군 공고 제2015-788호 소하천정비 시행계획(변경)공고(사두골천) 52
- 하동군 공고 제2015-791호 대송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변경) 60
- 하동군 공고 제2015-792호 상장암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변경) 65
- 하동군 공고 제2015-793호 사두골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변경) 70
- 하동군 공고 제2015-794호 하동군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75
- 하동군 공고 제2015-795호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76
- 하동군 공고 제2015-796호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81
- 하동군 공고 제2015-797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84
- 하동군 공고 제2015-800호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85
- 하동군 공고 제2015-805호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1건)등 입법예고 90
- 하동군 공고 제2015-806호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00
- 하동군 공고 제2015-807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113
- 하동군 공고 제2015-810호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4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439 호

하동군 고시 제2015-6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98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1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51-13 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1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9.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3) 제 439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55-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51-13	20150910	2007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395-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02-195	20150910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723-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길 39-7	20150910	20070618	선돌이 있어 입석이 되어 버린 법정리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북방리 56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신촌마을길 43-1	20150910	20080402	신촌이란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726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원곡길 79	20150910	20080402	원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1011-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729	20150910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123-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39	20150910	20090302	진교면과 양보면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로 진교면의 "진"과 양보면의 "양"으로 도로의 진행방향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변경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 로 340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사막2길 74	20150910	20090302	사평 사드래와 양막골의 마을을 합하여 붙여진 자연 마을이름에 일련번호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421-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642-24	20150910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301-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211-1	20150910	20090702	행정구역명 (옥종+수곡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463-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뒷뜰길 109-32	20150910	20120125	정수와 접한 마을인데 의양의 뒷뜰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하동군 옥종 다목적 생태 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세부 규정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내용은 일제 정비하여
 - 법령의 취지와 조문에 맞게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등을 개정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 가.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반환할 수 있다” 로 규정하게 되면 반환여부가 재량인 것처럼 보이므로, 해당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반환하도록 개정(안 제10조제1항)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17조제2항)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은 당연히 따라야 하므로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안 제18조)
 - 나.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망그러뜨리다”를 표준어 “망가트리다”로 수정(안 제19조1항)

다. 하동군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9월 27일까지 하동군(참조 :체육시설사업소, 전화 880-6442, FAX 880-2069)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별지서식 포함)

(6) 제 439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 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8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반환</u> 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② (생략)</p>	<p>제10조(이용료의 반환) ① ----- ----- ----- ----- ----- <u>반환한다.</u></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위탁관리) (생략)</p> <p><u><신 설></u></p>	<p>제17조(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u></p>
<p>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u>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u>」 및 「<u>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u>」,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제18조(준용규정) ----- ----- 「<u>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u>」----- ----- -----.</p>

하동군 공고 제2015-773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가. 중앙부처에서 자치법규에 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4조(관리 및 운영) 제3항에 관한 사항 신설
: 위탁기간과 갱신횟수 명시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26일까지 하동군(참조 : 산림녹지과, 전화 880-2488, FAX 880-2469, ttakkom@korea.kr)에게 **【별지 서식】** 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신구조문 대비표

(10) 제 439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 및 운영) ①·② (생략) <u><신 설></u>	제4조(관리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u>

하동군 공고 제2015-783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군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을 군 주최 및 주관 행사 공간으로 사용 시 사용료 30% 면제 대상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수정 필요
-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에 의거 적용 필요
- 사용자 수칙 중 이용자 소유물의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군(위탁자)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은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으로 수정 필요

3. 주요 내용

- 군 소유 및 운영 캠핑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군 주최 및 주관 행사 및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캠핑장 사용료 면제(안 제7조)
- 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와 동일 적용 (안 별표 2)
-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사용자 수칙 문구 추가 (안 별표 3)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5년 9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실 전화 880-2374, FAX 880-2369)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친구조문대비표 (별표, 별지서식 포함)

(14) 제 439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라. 비수기 평일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단체 및 장기체류자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6) 제 439 호

【별표 2】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 (제8조제2항)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 세부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함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2) 성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하 동 군 공 보

(17) 제 439 호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3) 비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세부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함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4) 비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별표 3】

사 용 자 수 칙

(제12조제1항)

사 용 자 수 칙

이곳에서의 생활을 자연과 함께 하시면서 즐기기 위해 이용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자 동 차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07:00까지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 특별히 허가된 야간오락 장소에서도 23:00부터 07:00까지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숙 시간은 21:00부터 07:00까지입니다.
6. 위 생
 - 식수 수도꼭지는 식수만을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 모든 동물은 항상 사람의 감독하에 있어야 합니다.
 - 동물의 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되며, 캠핑장내에서 동물은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8. 화재와 사고
 - 캠핑장내 잔디와 수목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지피는 것을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흥 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흥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흥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시설사용료 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자체행사를 하는 경우 다.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p> <p>2. 비수기 시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는 숙박시설 사용료의 30%를 할인할 수 있다.</p>	<p>제7조(사용료의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① 전액감면</p> <p>1. 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100분의 30 감면</p> <p>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비수기 평일에 단체 및 장기체류자</p>
<p>별표2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 별 첨 1 ></p>	<p>별표2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p> <p style="text-align: center;">< 별 첨 2 ></p>
<p>별표3 사용자 수칙</p> <p>10. 유실 또는 피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p>별표3 사용자 수칙</p> <p>10. 유실 또는 피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관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책임을 집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별 첨 1>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제8조제2항)

구 분	배상 및 환급기준	비고
1) 제5조에 따른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환급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 배상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 배상	
2)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사용료 환급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신구조문 대비표 <별 첨 2>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기준 (제8조제2항)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성수기 주중									* 세부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함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2) 성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					

하 동 군 공 보

(22) 제 439 호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3) 비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세부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함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 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 상		
4) 비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 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 상		
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하동군 공고 제2015-784호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1.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과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 례 】

- 기금조성의 재원 추가(제3조제3호)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기금관리공무원 회계 관직 준용 규정 신설(제6조제2항)
 - 기금운용관 : 징수관, 재무관 - 기금출납원 : 지출원, 출납원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신설(제7조~제9조)
- 관계규정의 준용(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사항 삭제(제8조)
 - 상위 법령인 “조례”가 하위 법령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본 조문을 규칙에 포함.

하 동 군 공 보

(24) 제 439 호

【 규 칙 】

-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정(제2조부터 제5조까지)
 -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출납원, - 기금출납명령관 → 기금운용관
- 기금의 사용 범위 삭제(제6조)
 -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관계규정의 준용 신설(제6조)
 -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 준용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 보건소, 전화 055-880-2352, FAX 880-6620, e-mail kilpo20@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 중 “식품진흥기금”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식품위생 및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자
2. 기금 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용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28) 제 439 호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서면심의를 실시 할 수 있다.
-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7조) 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동군 <u>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 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식품진흥기금</u> ----- ----- ----- -----.
제2조(기금의 설치) 군민의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관리하기 위하여 하동군에 <u>식품진흥기금</u> 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 ----- ----- <u>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u> -----.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2. (생략) <신설>	제3조(기금의 조성) ----- ----- 1.·2. (현행과 같음) 3. <u>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u>
제4조(기금의 용도) <u>기금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u> 1.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u> 2. <u>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u> 3. <u>위해식품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u> 4. <u>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u> 5. <u>그 밖에 식품위생 증진사업과 관련된 사항</u>	제4조(기금의 용도) <u>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u>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u>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한다.</u></p> <p>1. <u>기금출납명령관은 부군수로 한다.</u></p> <p>2. <u>기금출납공무원은 안전위생담당 주사로 한다.</u></p> <p>② <u>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u>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는 자로 임명한다.</u></p> <p>1. <u>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한다.</u></p> <p>2. <u>기금출납원 -----</u></p> <p>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③ <u>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u></p> <p>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p> <p>① <u>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u></p> <p>1. <u>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u></p> <p>2. <u>기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u></p> <p>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u></p> <p>⑤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위생담당주사가 된다.</u></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8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신 설></p> <p>제9조 (생 략)</p>	<p>제10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 ----- 80일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p>제9조(위원회 기능 및 운영)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용자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p>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p> <p>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p> <p>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p>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부) <u>기금출납공무원</u>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p> <p>1. ~ 9. (생략)</p>	<p>제2조(장부) <u>기금출납원</u>-----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u>기금출납명령관</u>은 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의 과징금을 징수할 때에는 행정처분 결정서류 또는 그 밖의 증거서류 등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p>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u>기금운용관</u> ----- ----- ----- ----- ----- -----.</p>
<p>제5조(수납절차) ① 지정 금융기관은 조례 제3조의 규정의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해당 <u>기금출납명령관</u>에게 지체 없이 영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u>기금출납공무원</u>이 식품위생단체 등의 출연금 등을 직접 영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출연금 영수증을 출여자 또는 지원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기금접수 대장에 기록한 후 그 영수일 또는 다음날 까지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p> <p>③ <u>기금출납공무원</u>이 정기예금 등의 이자, 그 밖의 기금 등을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p>	<p>제5조(수납절차) ① ----- ----- ----- ----- ----- <u>기금운용관</u>----- -----.</p> <p>② <u>기금출납원</u>----- ----- ----- ----- ----- -----.</p> <p>③ <u>기금출납원</u>----- ----- ----- ----- -----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금의 사용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위생에 관한 홍보사업 2.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 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4. 모범음식점 지원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61조에 규정한 사업 등 	<p>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공고 제2015 - 786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5년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상장암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하동군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 사 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 는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상장암천	상 장 암 천 정 비 사 업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1107-1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567-4	0.970	0.970	교량 1개소	2015. 05월	2017. 05월	소하천 정비	토지, 지장물 1식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상장암천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1. 소하천 공사의 명칭 : 상장암천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1107-1번지 ~ 장암리 567-4번지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0.970km, 교량 1개소
- 사 업 비 : 1,574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1107-1번지 ~ 장암리 567-4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장)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5. 05 ~ 2017. 05.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3)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장)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1,095일)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1,674	30	1,000	544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 비치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5. 10월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가.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5 - 880 - 2532~4)

위 치 도

SCALE = 1 : 50,000



道路規格

구분	종류	길이 (km)	면적 (km ²)	비율 (%)
전체	전체	10.0	15.0	30.0
국도	국도	0.2	1.3	13.0
군도	군도	10.7	0.9	12.0
읍도	읍도	16.6	0.7	9.0

縮尺 1 : 50,000



凡例

국도	
군도	
읍도	
행정구역	

作成者 兪 益 謙 日
檢證者 河 東 郡 守

001
000

< 상 장 암 천 정 비 사 업 편 입 토 지 조 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 유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 초	변 경	성 명	주 소
1	하동	양보	장암	882	천	86,205	5,971	4,297	국(농림축산식품부)	
2	하동	양보	장암	574	도	2,196	49	49	국(농림축산식품부)	
3	하동	양보	장암	567-13	답	21	15	16	경상남도	
4	하동	양보	장암	567-12	답	33	33	33	하동군	
5	하동	양보	장암	567-11	답	19	19	19	하동군	
6	하동	양보	장암	567-10	답	32	32	32	하동군	
7	하동	양보	장암	567-9	답	70	70	70	하동군	
8	하동	양보	장암	567-8	답	23	23	23	하동군	
9	하동	양보	장암	538-13	답	16	16	16	하동군	
10	하동	양보	장암	538-12	답	19	19	19	하동군	
11	하동	양보	장암	538-11	답	68	68	68	하동군	
12	하동	양보	장암	538-10	답	50	50	50	하동군	
13	하동	양보	장암	538	구	167	143	144	국(농림축산식품부)	
14	하동	양보	장암	538-14	도	266	55	74	하동군	
15	하동	양보	장암	519-1	도	7	4	4	하동군	
16	하동	양보	장암	1018-5	도	87	32	35	국(국토교통부)	
17	하동	양보	장암	520-1	도	56	23	27	하동군	
18	하동	양보	장암	520-3	답	30	9	12	하동군	
19	하동	양보	장암	520-4	도	7	7	7	하동군	
20	하동	양보	장암	537-10	구	1,038	20	25	국(농림축산식품부)	

하 동 군 공 보

(40) 제 439 호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 유 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21	하동	양보	장암	537	도	894	894	894	국 (농림축산식품부)	
22	하동	양보	장암	537-2	구	165	3	11	국 (농림축산식품부)	
23	하동	양보	장암	537-14	도	68	8	11	경상남도	
24	하동	양보	감당	257-2	도	5,024	358	357	국 (농림축산식품부)	
25	하동	양보	감당	250-9	답	137	137	137	하동군	
26	하동	양보	감당	250-8	답	57	57	57	하동군	
27	하동	양보	감당	250-7	답	69	69	69	하동군	
28	하동	양보	감당	250-6	답	191	191	191	하동군	
29	하동	양보	감당	250-5	답	211	211	211	하동군	
30	하동	양보	감당	247-5	구	2,016	168	148	국 (농림축산식품부)	
31	하동	양보	감당	248-5	도	164	16	16	하동군	
32	하동	양보	감당	1158	도	12,153	3	6	국(국토교통부)	
33	하동	양보	감당	258	구	5,188	142	116	국 (농림축산식품부)	
34	하동	양보	감당	241-9	답	233	233	233	하동군	
35	하동	양보	감당	241-8	답	65	65	65	하동군	
36	하동	양보	감당	241-7	답	20	20	20	하동군	
37	하동	양보	감당	258	구	5,188	119	110	국 (농림축산식품부)	
38	하동	양보	감당	239-3	도	387	86	84	국 (농림축산식품부)	
39	하동	양보	감당	239-8	답	196	196	196	하동군	
40	하동	양보	감당	239-10	답	25	25	25	경상남도	
41	하동	양보	감당	239-7	도	3	3	3	경상남도	
42	하동	양보	감당	239-9	답	5	5	5	경상남도	
43	하동	양보	감당	239-6	도	9	9	9	경상남도	

하 동 군 공 보

(41) 제 439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	하동	양보	장암	567-4	답	2,212	169	219	황금석	양보면 운암리 222-6
2	하동	양보	장암	567-3	답	1,379	157	189	정양용	부산연제구거제동 890-33 창신연립201호
3	하동	양보	장암	567-2	답	1,250	148	175	정양용	부산연제구거제동 890-33 창신연립201호
4	하동	양보	장암	567-1	답	2,655	324	383	정승용	장암리 469-1
5	하동	양보	장암	567	답	1,161	131	155	정승용	장암리 469-1
6	하동	양보	장암	538-8	답	1,619	153	188	공환석	장암리 819
7	하동	양보	장암	538-7	답	3,150	16	32	하의문	감당리 356
8	하동	양보	장암	538-3	답	1,760	121	149	박춘봉	양보면 진양로 985
9	하동	양보	장암	538-2	답	1,831	396	484	강부건	창원시진해구웅천로 153번길 31-23
10	하동	양보	장암	538-1	답	1,099	421	516	정승용 정영환 신정환	장암리469-1 장암리713 장암리713
11	하동	양보	장암	521-3	답	169	1	1	서남조	감당리 184
12	하동	양보	장암	537-8	답	3,770	335	368	정서기	장암리 530
13	하동	양보	장암	537-7	답	2,189	94	126	배문환	경기남양주시기금로 24 롯데아파트 801-1502
14	하동	양보	장암	537-6	답	3,522	17	57	김외숙	부산남구대연동 243-33 대연청구아파트 110-702
15	하동	양보	장암	537-4	답	1,385	4	26	유정목	감당리 620
16	하동	양보	장암	537-1	답	548	23	83	배규열	장암리 876
17	하동	양보	장암	536-2	도	301	17	18	정호기	장암리 754
18	하동	양보	장암	537-5	답	2,201	0	36	배정환	울산 북구 천곡남로 37 코아루아파트 114-203
19	하동	양보	감당	250-4	답	3,083	336	325	장정갑	장암리 674
20	하동	양보	감당	250-3	답	1,442	116	108	정임기	감당리 799
21	하동	양보	감당	250-2	답	1,700	117	110	정임기	감당리 799
22	하동	양보	감당	250-1	답	3,360	404	351	김근태	감당리 96
23	하동	양보	감당	250	답	809	407	350	추금순	부산 동구 좌천동 3-7
24	하동	양보	감당	248-3	답	2,338	16	6	손경균	감당리 220

하 동 군 공 보

(42) 제 439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25	하동	양보	감당	248-2	답	2,419	72	51	김정덕	감당리 191
26	하동	양보	감당	248-1	답	1,820	22	19	김정덕	감당리 191
27	하동	양보	감당	240-38	도	13	9	8	배상운	장암리 876-2
28	하동	양보	감당	244-2	도	7	2	0	배상운	장암리 876-2
29	하동	양보	감당	241-6	답	836	555	568	김용식	감당리 185-1
30	하동	양보	감당	241-5	답	756	187	198	정영창	부산 남구 대연동 1475-32
31	하동	양보	감당	241-4	답	1,934	230	221	김남식	장암리 887
32	하동	양보	감당	241-3	답	1,266	1	2	박춘봉	양보면 진양로 985
33	하동	양보	감당	239-2	답	1,222	614	603	박춘봉	양보면 진양로 985
34	하동	양보	감당	239-1	답	278	29	25	정철영	진주시 강남동 245-11
35	하동	양보	감당	252-2	도	304	25	28	정형기	장암리

소하천정비시행계획 공고(변경)

공고 제2015 - 787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5년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대송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하동군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 사 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 는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대송천	대 송 천 정 비 사 업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33-2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748-13	1.600	1.600	교량 4개소	2015. 05월	2017. 05월	소하천 정비	토지, 지장물 1식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대송천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1. 소하천 공사의 명칭 : 대송천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33-2지 ~ 대송리 748-13번지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1.600km, 교량 4개소
 - 사 업 비 : 2,827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33-2번지 ~ 대송리 748-13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장)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5. 05 ~ 2017. 05.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3)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장)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1,095일)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2,827	30	1,000	1,797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 비치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5. 10월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가.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5 - 880 - 2532~4)

위 치 도

SCALE = 1 : 50,000



하 동 군 공 보

(47) 제 439 호

< 대송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 · 공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1	하동	금남	대송	740-9	답	1,530	100	100	하동군	
2	하동	금남	대송	719	구	3,330	1,951	1,951	국(농림수산부)	
3	하동	금남	대송	746	도	975	975	975	국(농림수산부)	
4	하동	금남	대송	739	도	80	41	41	국(농림수산부)	
5	하동	금남	대송	737	구	1,251	204	204	국(농림수산부)	
6	하동	금남	대송	840-16	구	3,771	3,771	3,771	국(국토교통부)	
7	하동	금남	대송	678	답	175	175	175	하동군	
8	하동	금남	대송	856-6	구	217	113	113	국(국토교통부)	
9	하동	금남	대송	715	구	1,707	893	893	국(농림수산부)	
10	하동	금남	대송	716	도	509	291	291	국(농림수산부)	
11	하동	금남	대송	747	도	848	848	848	국(농림수산부)	
12	하동	금남	대송	718	도	2,850	1,074	1,074	국(농림수산부)	
13	하동	금남	대송	717	구	958	662	662	국(농림수산부)	
14	하동	금남	대송	840-10	구	1,536	977	977	국(국토교통부)	
15	하동	금남	대송	379	도	3,835	1,492	1,492	국(농림수산부)	
16	하동	금남	대송	313	구	15,580	41	41	국(농림수산부)	
17	하동	금남	대송	322	도	1,182	29	29	국(농림수산부)	
18	하동	금남	대송	272-11	도	367	367	367	국(국토교통부)	
19	하동	금남	대송	321-6	답	851	99	119	국(국토교통부)	
20	하동	금남	대송	333-8	도	289	244	244	국(국토교통부)	
21	하동	금남	대송	397-4	답	8	8	8	하동군	
22	하동	금남	대송	840-1	구	14,527	1,511	1,511	국(국토교통부)	

하 동 군 공 보

(48) 제 439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촌	변경	성 명	주 소
1	하동	금남	대송	740-8	답	968	167	169	김동관	김해시 구산동 410 구산동제4주공아파트 403-1304
2	하동	금남	대송	740-7	답	676	119	119	문종윤	대송리 739
3	하동	금남	대송	740-6	답	806	98	98	문갑룡	대송리 479
4	하동	금남	대송	740-5	답	1,055	80	80	황금석	대송리 478
5	하동	금남	대송	740-4	답	1,194	100	100	황금석	대송리 478
6	하동	금남	대송	740-3	답	969	144	145	장미화 외 1	여수시 신기동 90 제일모직사택5동 502호
7	하동	금남	대송	740-2	답	693	116	116	이춘기	대도리 143-1
8	하동	금남	대송	740-1	답	1,103	152	155	이춘기	대도리 143-1
9	하동	금남	대송	738	답	800	326	324	이춘기	대도리 143-1
10	하동	금남	대송	679	천	53	53	53	최대성	
11	하동	금남	대송	713-2	답	954	954	954	강영태	부산 사하구 신평동 408 신익강변타운 1차 101동 101호
12	하동	금남	대송	713-1	답	948	948	948	강영태	부산 사하구 신평동 408 신익강변타운 1차 101동 101호
13	하동	금남	대송	712	답	1,498	706	708	이승수	진정리 586
14	하동	금남	대송	711	답	1,649	102	98	임도섭	대송리 510
15	하동	금남	대송	710	답	2,553	78	76	류 덕	대송리 480
16	하동	금남	대송	748-13	답	2,374	202	202	구인순	진주시 인사동 142-8
17	하동	금남	대송	748-12	답	1,638	168	168	문재억	대송리 538-1
18	하동	금남	대송	748-11	답	2,066	164	166	문재억	대송리 538
19	하동	금남	대송	748-10	답	2,347	138	141	이학세	대도리 139
20	하동	금남	대송	748-9	답	2,604	180	181	이정수	대도리 23
21	하동	금남	대송	748-8	답	2,806	129	129	정규원	대송리 527
22	하동	금남	대송	735-4	답	1,138	373	378	이행철	진해시 용원동 1208 일신님아파트 107-1406
23	하동	금남	대송	735-3	답	1,042	148	148	이옥기	대도리 42

하 동 군 공 보

(49) 제 439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24	하동	금남	대송	735-2	답	1,351	174	175	양청실	진정리 497
25	하동	금남	대송	735-1	답	1,546	199	202	최경식	대송리 767
26	하동	금남	대송	734-6	답	2,315	201	201	양오석 외1	김해시 삼방동 692 화인아파트
27	하동	금남	대송	734-5	답	1,296	90	89	이세영	대도리 118
28	하동	금남	대송	734-4	답	1,007	66	66	이신오	대도리 118
29	하동	금남	대송	734-3	답	2,267	127	128	이신오	대도리 118
30	하동	금남	대송	751-1	답	1,202	233	234	이갑수 외2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258-1
31	하동	금남	대송	676-9	답	1,954	271	271	조영수	대송리 725-2
32	하동	금남	대송	399-1	도	459	218	221	이종민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828
33	하동	금남	대송	439-13	답	719	59	59	김갑선	대송리 2-1
34	하동	금남	대송	397-1	답	82	82	82	이동열	대송리 405
35	하동	금남	대송	397-3	도	64	64	64	이동열	대송리 405
36	하동	금남	대송	439-12	답	1,538	161	162	김갑선	대송리 2-1
37	하동	금남	대송	439-11	답	2,052	134	134	김점숙	통영시 명정동 415-9
38	하동	금남	대송	439-10	답	1,188	54	54	조순호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945-7통영청구하이츠 202-703
39	하동	금남	대송	439-9	답	1,475	59	58	김도임	대송리 173
40	하동	금남	대송	439-6	답	1,376	8	7	이수양	송문리 79
41	하동	금남	대송	439-5	답	1,867	53	53	서원상	금남면 동서실 16-18
42	하동	금남	대송	439-4	답	1,333	41	41	이준기	대송리 334
43	하동	금남	대송	439-3	답	2,231	84	83	정태원	통영시 미수동 434-9
44	하동	금남	대송	439-2	답	3,334	137	137	황금석	금남면 덕오길 218
45	하동	금남	대송	307-1	답	52	52	52	정범식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2번길 10 율량동 성원아파트 101-1405
46	하동	금남	대송	307-11	도	101	101	101	정범식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2번길 10 율량동 성원아파트 101-1405

하 동 군 공 보

(50) 제 439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24	하동	금남	대송	735-2	답	1,351	174	175	양청실	진정리 497
25	하동	금남	대송	735-1	답	1,546	199	202	최경식	대송리 767
26	하동	금남	대송	734-6	답	2,315	201	201	양오석 외1	김해시 삼방동 692 화인아파트
27	하동	금남	대송	734-5	답	1,296	90	89	이세영	대도리 118
28	하동	금남	대송	734-4	답	1,007	66	66	이신오	대도리 118
29	하동	금남	대송	734-3	답	2,267	127	128	이신오	대도리 118
30	하동	금남	대송	751-1	답	1,202	233	234	이갑수 외2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258-1
31	하동	금남	대송	676-9	답	1,954	271	271	조영수	대송리 725-2
32	하동	금남	대송	399-1	도	459	218	221	이종민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828
33	하동	금남	대송	439-13	답	719	59	59	김갑선	대송리 2-1
34	하동	금남	대송	397-1	답	82	82	82	이동열	대송리 405
35	하동	금남	대송	397-3	도	64	64	64	이동열	대송리 405
36	하동	금남	대송	439-12	답	1,538	161	162	김갑선	대송리 2-1
37	하동	금남	대송	439-11	답	2,052	134	134	김점숙	통영시 명정동 415-9
38	하동	금남	대송	439-10	답	1,188	54	54	조순호	통영시 용남면 동달리 945-7통영청구하이츠 202-703
39	하동	금남	대송	439-9	답	1,475	59	58	김도임	대송리 173
40	하동	금남	대송	439-6	답	1,376	8	7	이수양	송문리 79
41	하동	금남	대송	439-5	답	1,867	53	53	서원상	금남면 동서실 16-18
42	하동	금남	대송	439-4	답	1,333	41	41	이준기	대송리 334
43	하동	금남	대송	439-3	답	2,231	84	83	정태원	통영시 미수동 434-9
44	하동	금남	대송	439-2	답	3,334	137	137	황금석	금남면 덕오길 218
45	하동	금남	대송	307-1	답	52	52	52	정범식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2번길 10 율량동 성원아파트 101-1405
46	하동	금남	대송	307-11	도	101	101	101	정범식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2번길 10 율량동 성원아파트 101-1405

하 동 군 공 보

(51) 제 439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47	하동	금남	대송	305-7	도	23	23	23	정기재	대송리 280-3
48	하동	금남	대송	305-6	도	33	33	33	정범식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32번길 10 울량동 성원아파트 101-1405
49	하동	금남	대송	274-3	대	340	7	2	지원근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169-4 그리미아빌 201호
50	하동	금남	대송	274-7	도	43	43	43	지길례	부산 사상구 주례동 300-14
51	하동	금남	대송	274-5	도	187	82	106	지길석	대송리 232
52	하동	금남	대송	272-4	도	280	21	21	정기용	대송리 326
53	하동	금남	대송	271-1	도	18	18	18	정기재	대송리 284
54	하동	금남	대송	321-3	답	1,241	46	45	정기재	대송리 284
55	하동	금남	대송	439-1	답	3,000	76	81	김종화	대송리 719

소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공고

공고 제2015 - 788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5년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사두골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하동군수

소하천명	사업 개요									비고
	공 사 명	공사 위치		사업량(k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시작하 는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사두골천	사 두 골 천 정 비 사 업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162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59-3	0.936	0.936	부대공 1식	2015. 05월	2017. 05월	소하천 정비	토지, 지장물 1식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사두골천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1. 소하천 공사의 명칭 : 사두골천 정비사업
2.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태풍내습)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위 치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162번지 ~ 459-3번지
 - 사 업 량 : 축제 및 호안 L=0.936km, 기타 부대시설 등
 - 사 업 비 : 1,674백만원
3.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162번지 ~ 459-3번지
4.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장)
 -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번지
5.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5. 05 ~ 2017. 05.
6.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3) 참조
7.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하동군수(안전총괄과장)

하 동 군 공 보

(54) 제 439 호

8.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9. 실시설계도서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담당 비치

10.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1,095일)로 한다.

11.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1,674	30	1,000	644	

12.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계획

가.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 비치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절차 및 방법

- 보상시기 : 2015. 10월 이후
- 보상절차 및 방법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에서 소유자와 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 보상가액산정 : 보상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출평균치

13. 기타사항

- 가.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5 - 880 - 2532~4)

위 치 도

SCALE = 1 : 50,000



道 勢 概 況

面 別	面 積 (km ²)	人 口 (人)	人 口 密 度 (人/km ²)
全 體	12.2	24.2	2.4
北 川 面	-	-	-
北 川 面	4.2	13.5	4.2
北 川 面	15.8	5.7	10.1

縮 尺 1 : 50,000

凡 例

國 道	
道 道	
縣 道	
村 莊 界 限	

作成者 建設廳 地 誌 編 纂 科
 檢 査 者 地 誌 編 纂 科

1957
 1955

하 동 군 공 보

(56) 제 439 호

< 사두골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

편 입 용 지 조 서 (국·공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소
1	하동	북천	사평	1086	천	13,847	78	73	국(국토교통부)	
2	하동	북천	사평	1080	도	8,443	32	26	국(농림축산식품부)	
3	하동	북천	사평	1069	구	3,923	1,902	1,906	국(농림축산식품부)	
4	하동	북천	사평	1070	도	1,012	136	140	국(농림축산식품부)	
5	하동	북천	사평	1220-5	천	7,028	3,175	3,175	국(국토교통부)	
6	하동	북천	사평	1260	도	1,338	137	138	국(국토교통부)	
7	하동	북천	사평	1239	도	3,901	156	152	국(국토교통부)	
8	하동	북천	사평	1099-1	도	77	3	4	하동군	
9	하동	북천	사평	1268	도	76	9	10	국(국토교통부)	
10	하동	북천	사평	1130-3	도	187	18	19	하동군	
11	하동	북천	사평	1131-2	도	130	22	27	하동군	
합 계						39,962	5,668	5,670		

하 동 군 공 보

(57) 제 439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1	하동	북천	사평	459-3	답	2,148	120	134	김행구	진주시 신안동 782-38
2	하동	북천	사평	461-1	답	2,189	230	244	김태선	서울강서구등촌동 628-17 공군연립2-22
3	하동	북천	사평	461-2	답	3,104	1,046	1,058	문도식	사평리 507
4	하동	북천	사평	461-3	답	1,450	163	173	이금규 이득규 이철규	사평리334 사평리350 서울은평구갈현동 340
5	하동	북천	사평	461-4	답	853	210	214	이상억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14
6	하동	북천	사평	461-5	답	921	259	264	박영자	사평리 334
7	하동	북천	사평	461-6	답	340	106	110	김기태	사평리 323
8	하동	북천	사평	461-7	답	1,163	304	312	이상부	진주시 평거로 268번길 3(이현동)
9	하동	북천	사평	461-8	답	1,599	222	234	조성우	진주시 가좌동 660 주공210-802
10	하동	북천	사평	461-9	답	1,023	1,023	1,023	조성우	진주시 가좌동 660 주공210-802
11	하동	북천	사평	460-10	답	1,270	6	8	강명남	사평리 321
12	하동	북천	사평	436-1	임	1,302	279	236	강수관	진주시 상평동 268-62
13	하동	북천	사평	436-4	임	1,154	362	309	문도식	사평리 507
14	하동	북천	사평	436-5	임	2,000	616	545	이상억 강수관 황귀홍 김현준 이상익 강봉규	사평리334 사평리411 사평리335 사평리336 사평리338 사평리330
15	하동	북천	사평	362	답	46	46	46	김낙희	사평리 326
16	하동	북천	사평	363	답	208	208	208	강필옥	사평리 330
17	하동	북천	사평	363-1	도	30	21	19	강필옥	사평리 330
18	하동	북천	사평	364-1	도	37	21	19	이영규	사평리 334
19	하동	북천	사평	364	임	826	448	438	이상석	사평리 334
20	하동	북천	사평	365	임	2,269	189	189	이상경	사평리 334
21	하동	북천	사평	359-16	도	148	26	31	강필옥	사평리 330
22	하동	북천	사평	355-4	도	15	9	10	곽우분	사평리 330
23	하동	북천	사평	355-6	답	909	151	156	김육현	사평리 1058

하 동 군 공 보

(58) 제 439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24	하동	북천	사평	355	답	2,115	314	317	정무식	부산 북구 구포동 1060
25	하동	북천	사평	331	임	4,886	181	176	진주강씨 회양공파 중중중	사평리 346
26	하동	북천	사평	332	임	595	361	355	진주강씨 회양공파 중중중	사평리 346
27	하동	북천	사평	333-1	대	376	96	104	이영희	부산 북구 만덕동 841-15
28	하동	북천	사평	333	답	429	255	269	홍기표	사평리 336
29	하동	북천	사평	1099	답	320	101	109	김성조	사평리 36
30	하동	북천	사평	1100	답	30	30	30	정명수	사평리 336
31	하동	북천	사평	1101	답	3,180	464	433	이무기	하동군 북천면 모성 길 52-1
32	하동	북천	사평	1104	답	3,142	108	93	강호식	서울 동대문구 장안 동 346-26
33	하동	북천	사평	1123	답	2,909	713	750	이무기	하동군 북천면 모성 길 52-1
34	하동	북천	사평	1122	답	995	313	310	정형	부산 동래구 연산동 2123
35	하동	북천	사평	1121	답	155	13	9	정형	사평리 345
36	하동	북천	사평	1126	답	1,676	285	305	정형	부산 동래구 연산동 2123
37	하동	북천	사평	1127-4	답	1,493	54	58	최강숙 김수규	부산사상구가야대로 330번길 83-9 (주례동)
38	하동	북천	사평	1127-3	답	417	3	5	최강숙 김수규	부산사상구가야대로 330번길 83-9 (주례동)
39	하동	북천	사평	1128	답	83	77	83	김관성기 김관현두	사평리326 양보면우복리337
40	하동	북천	사평	1129	답	400	56	60	정명수	사평리 336
41	하동	북천	사평	1130-2	답	2,458	313	334	김철현	삼천포시동금동88-4 경남APT가-306
42	하동	북천	사평	1131	답	662	10	11	김두현 김육현 김철현 김상철	사평리1056 사평리1058 삼천포시동금동88-4 사평리91
43	하동	북천	사평	1131-3	답	65	1	8	홍기표	사평리 336
44	하동	북천	사평	1119	답	836	172	159	김궁성기 김궁현두	사평리326 양보면우복리337
45	하동	북천	사평	1118	답	1,501	294	268	이영태	사평리 347
46	하동	북천	사평	1117-1	답	2,483	271	262	박상순	사평리 36

하 동 군 공 보

(59) 제 439 호

편 입 용 지 조 서 (사유지)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47	하동	북천	사평	1117-2	답	1,484	86	80	김원태	부산동래구남산동 101-1 금정아파트A-401
48	하동	북천	사평	1170	답	721	157	162	홍기표	사평리 336
49	하동	북천	사평	1171	답	2,119	89	76	홍기표	사평리 336
합 계						60,534	10,150	10,806		

하동군 공고 제2015 - 791호

대송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변경)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대송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1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대송천 정비사업
- 나. 위 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33-2 ~ 459-3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소하천 정비 L=1,600m
- 라. 사업기간 : 2015. 05. ~ 2017. 05 [2015년 편입용지 보상]
- 마.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붙임 편입조서 참조(변경)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5년 09월 11일 ~ 09월 25일(15일간)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및 하동군 홈페이지
- 다. 이의신청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055-880-2532~4)
-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5년 10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현금(계좌) 지급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나.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동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에 따라 분할 예정이며 예상편입면적과 확정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055-880-2532~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 동 군 공 보

(62) 제 439 호

편입용지조서집계표

지 목	국 유 지			사 유 지			합 계		
	필 지	권입면적(당초)	권입면적(변경)	필 지	권입면적(당초)	권입면적(변경)	필 지	권입면적(당초)	권입면적(변경)
구	9	10,123	10,123				9	10,123	10,123
답	4	382	402	44	7,999	8,017	48	8,381	8,419
대				1	7	2	1	7	2
도	9	5,361	5,361	9	603	630	18	5,964	5,991
천				1	53	53	1	53	53
계	22	15,866	15,886	55	8,662	8,702	77	24,528	24,588

편 입 용 지 조 서(1)

순 위	등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대장면적	권입면적(당초)	권입면적(변경)	주 소	성 명	
1	금남면 대송리	740-9	답	1,530	100	100		하동군	
2	"	740-8	답	968	167	169	경상남도 김해시 구산동 410 구산동제4주공아파트 403-1304	김동관	
3	"	740-7	답	676	119	119	739	문종윤	
4	"	740-6	답	806	98	98	479	문갑룡	
5	"	719	구	3,330	1,951	1,951		국(농림수산부)	
6	"	740-5	답	1,055	80	80	478	황금석	
7	"	746	도	975	975	975		국(농림수산부)	
8	"	740-4	답	1,194	100	100	478	황금석	
9	"	740-3	답	969	144	145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90 제일모직사택5동 502호	장미화 외 1인	
10	"	740-2	답	693	116	116	대도리 143-1	이훈기	
11	"	740-1	답	1,103	152	155	대도리 143-1	이훈기	
12	"	739	도	80	41	41		국(농림수산부)	
13	"	737	구	1,251	204	204		국(농림수산부)	
14	"	738	답	800	326	324	대도리 143-1	이훈기	
15	"	840-16	구	3,771	3,771	3,771		국(국토교통부)	
16	"	678	답	175	175	175		하동군	
17	"	679	천	53	53	53		최대성	
소계				19,429	8,572	8,576			

하 동 군 공 보

(63) 제 439 호

편 입 용 지 조 서(2)

순 위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당초)	편입면적(변경)	주 소	성 명	
18	금남면 대송리	856-6	구	217	113	113			국(국토교통부)
19	"	713-2	답	954	954	954	부산 사하구 신평동 408 신익강변타운 1차 101동 101호		강영태
20	"	713-1	답	948	948	948	부산 사하구 신평동 408 신익강변타운 1차 101동 101호		강영태
21	"	715	구	1,707	893	893			국(농림수산부)
22	"	712	답	1,498	706	708	진정리 586		이승수
23	"	711	답	1,649	102	98	510		임도섭
24	"	716	도	509	291	291			국(농림수산부)
25	"	710	답	2,553	78	76	480		류덕
26	"	748-13	답	2,374	202	202	경상남도 진주시 민사동 142-8		구인순
27	"	748-12	답	1,638	168	168	538-1		문재익
28	"	748-11	답	2,066	164	166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538		문재익
29	"	747	도	848	848	848			국(농림수산부)
30	"	748-10	답	2,347	138	141	대도리 139		이현채
31	"	748-9	답	2,604	180	181	대도리 23		이정수
32	"	748-8	답	2,806	129	129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527		정규원
33	"	735-4	답	1,138	373	378	진해시 용원동 1208 일신남아파트 107-1406		이병철
34	"	735-3	답	1,042	148	148	대도리 42		이육기
소계				26,898	6,435	6,442			

편 입 용 지 조 서(3)

순 위	동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당초)	편입면적(변경)	주 소	성 명	
35	금남면 대송리	735-2	답	1,351	174	175	진정리 497		양정실
36	"	735-1	답	1,546	199	20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767		최경식
37	"	718	도	2,850	1,074	1,074			국(농림수산부)
38	"	734-6	답	2,315	201	201	김해시 삼방동 692 화인아파트 105동 602호		양오석 외 1인
39	"	734-5	답	1,296	90	89	대도리 118		이세영
40	"	734-4	답	1,007	66	66	대도리 118		이신오
41	"	734-3	답	2,267	127	128	대도리 118		이신오
42	"	717	구	958	662	662			국(농림수산부)
43	"	751-1	답	1,202	233	234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 삼선리 258-1		이갑수 외 2인
44	"	676-9	답	1,954	271	271	725-2		조영수
45	"	399-1	도	459	218	221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828		이종민
46	"	840-10	구	1,536	977	977			국(국토교통부)
47	"	439-13	답	719	59	59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2-1		김광선
48	"	397-1	답	82	82	82	405		이동열
49	"	397-3	도	64	64	64	405		이동열
50	"	439-12	답	1,538	161	162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2-1		김광선
51	"	439-11	답	2,052	134	134	통영시 명정동 415-9		김점숙
소계				23,196	4,792	4,801			

하 동 군 공 보

(64) 제 439 호

편 입 용 지 조 서(4)

순 위	등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당초)	편입면적(변경)	주 소	성 명	
52	금남면 대송리	439-10	답	1,188	54	54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등달리 945-7 통영청구하이츠 202-703	조순호	
53	"	439-9	답	1,475	59	59	173	김도임	
54	"	379	도	3,835	1,492	1,492		국(농림수산부)	
55	"	439-6	답	1,376	8	7	송문리 79	이수양	
56	"	439-5	답	1,867	53	53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동서실 16-18	서원상	
57	"	439-4	답	1,333	41	41	334	이준기	
58	"	439-3	답	2,231	84	83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434-9	장태원	
59	"	439-2	답	3,334	137	137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덕오길 218	황금석	
60	"	307-1	답	52	52	52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92번길 10,101층 140(윙클라운, 설피아파트)	정범식	
61	"	307-11	도	101	101	10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92번길 10,101층 140(윙클라운, 설피아파트)	정범식	
62	"	313	구	15,580	41	41		국(농림수산부)	
63	"	305-7	도	23	23	23	280-3	장기재	
64	"	305-6	도	33	33	3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92번길 10,101층 140(윙클라운, 설피아파트)	정범식	
65	"	322	도	1,182	29	29		국(농림수산부)	
66	"	274-3	대	340	7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포이동 169-4 그리아이빌 201호	지원근	
67	"	274-7	도	43	43	43	부산 사상구 주례동 300-14	지갈래	
68	"	274-5	도	187	82	106	232	지갈석	
소계				34,180	2,339	2,355			

편 입 용 지 조 서(5)

순 위	등 명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대장면적	편입면적(당초)	편입면적(변경)	주 소	성 명	
69	금남면 대송리	272-4	도	280	21	21	326	장기용	
70	"	272-11	도	367	367	367		국(국토교통부)	
71	"	271-1	도	18	18	18	284	장기재	
72	"	321-6	답	851	99	119		국(국토교통부)	
73	"	321-3	답	1,241	46	45	284	장기재	
74	"	333-8	도	289	244	244		국(국토교통부)	
75	"	397-4	답	8	8	8		하동군	
76	"	439-1	답	3,000	76	81	729	김종화	
77	"	840-1	구	14,527	1,511	1,511		국(국토교통부)	
소계				20,581	2,390	2,414			
합계				124,284	24,528	24,588			

하동군 공고 제2015 - 792호

상장암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변경)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상장암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1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상장암천 정비사업
- 나. 위 치 :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1107-1번지 ~ 장암리 567-4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소하천 정비 L=970m, 교량 1개소
- 라. 사업기간 : 2015. 05. ~ 2017. 05 [2015년 편입용지 보상]
- 마.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붙임 편입조서 참조(변경)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5년 09월 11일 ~ 09월 25일(15일간)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및 하동군 홈페이지
- 다. 이의신청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055-880-2532~4)
-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하 동 군 공 보

(66) 제 439 호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5년 10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현금(계좌) 지급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나.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동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에 따라 분할 예정이며 예상편입면적과 확정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055-880-2532~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 동 군 공 보

(67) 제 439 호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대비)(1)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당초	변경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1	하동	양보	장암	882	천	86,205	4,290	4,297	국(농림축산식품부)					
2	2	하동	양보	장암	574	도	2,196	49	49	국(농림축산식품부)					
3	3	하동	양보	장암	567-13	답	21	15	16	경상남도					
4	4	하동	양보	장암	567-12	답	33	33	33	하동군					
5	5	하동	양보	장암	567-18 (567-4)	답	2,212	169	219	황금석	양보면 운암리 222-6				
6	6	하동	양보	장암	567-11	답	19	19	19	하동군					
7	7	하동	양보	장암	567-17 (567-3)	답	1,379	157	189	정양용	부산 연제구 거제동 890-33 창산연립 201호				
8	8	하동	양보	장암	567-10	답	32	32	32	하동군					
9	9	하동	양보	장암	567-16 (567-2)	답	1,250	148	175	정양용	부산 연제구 거제동 890-33 창산연립 201호				
10	10	하동	양보	장암	567-9	답	70	70	70	하동군					
11	11	하동	양보	장암	567-15 (567-1)	답	2,655	324	383	정승용	장암리 469-1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부지사), 금오농업협동조합	경기 의왕 포일동 487,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153-2	근저당권	
12	12	하동	양보	장암	567-8	답	23	23	23	하동군					
13	13	하동	양보	장암	567-14 (567)	답	1,161	131	155	정승용	장암리 469-1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부지사), 금오농업협동조합	경기 의왕 포일동 487,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153-2	근저당권	
14	14	하동	양보	장암	538-13	답	16	16	16	하동군					
15	15	하동	양보	장암	538-22 (538-8)	답	1,619	153	188	공환석	장암리 819				
16	16	하동	양보	장암	538-21 (538-7)	답	3,150	16	32	하의문	감당리 356				
17	17	하동	양보	장암	538-12	답	19	19	19	하동군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대비)(2)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당초	변경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8	18	하동	양보	장암	538-20 (538-3)	답	1,760	121	149	박춘봉	양보면 진양로 985	금오농업협동조합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153-2	근저당권	
19	19	하동	양보	장암	538-11	답	68	68	68	하동군					
20	20	하동	양보	장암	538-19 (538-2)	답	1,831	396	484	강부건	창원시 진해구 울진로 153번길 31-23				
21	21	하동	양보	장암	538-10	답	50	50	50	하동군					
22	22	하동	양보	장암	538-18 (538-1)	답	1,099	421	516	정승용 정영한 신정환	장암리 469-1 장암리 713 장암리 713				
23	23	하동	양보	장암	538	구	167	143	144	국(농림축산식품부)					
24	24	하동	양보	장암	538-14	도	266	55	74	하동군					
25	25	하동	양보	장암	519-1	도	7	4	4	하동군					
26	26	하동	양보	장암	1018-5	도	87	32	35	국(국토교통부)					
27	27	하동	양보	장암	520-1	도	56	23	27	하동군					
28	28	하동	양보	장암	520-3	답	30	9	12	하동군					
29	29	하동	양보	장암	521-3	답	169	1	1	서남조	감당리 184				
30	30	하동	양보	장암	520-4	도	7	7	7	하동군					
31	31	하동	양보	장암	537-10	구	1,038	20	25	국(농림축산식품부)					
32	32	하동	양보	장암	537	도	894	894	894	국(농림축산식품부)					
33	33	하동	양보	장암	537-26 (537-8)	답	3,770	335	368	정서기	장암리 530				
34	34	하동	양보	장암	537-25 (537-7)	답	2,189	94	126	배문환	경기 남양주시 기금로 24 롯데아파트 801-1502	금오농업협동조합	경남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9	근저당권	
35	35	하동	양보	장암	537-24 (537-6)	답	3,522	17	57	김외숙	부산 남구 대연동 243-33 대연청구아파트 110-702				

하 동 군 공 보

(68) 제 439 호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대비)(3)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당초	변경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6	하동	양보	장암	537-23 (537-5)	답	2,201	0	36	배정환	울산 북구 천곡남로 37 코아루아파트 114-203			
36	37	하동	양보	장암	537-22 (537-4)	답	1,385	4	26	유정목	감당리 620			
37	38	하동	양보	장암	537-2	구	165	3	11	국(농림축산식품부)				
38	39	하동	양보	장암	537-21 (537-1)	답	548	23	83	배규열	장암리 876	(국) 수영세무서		압류
39	40	하동	양보	장암	537-14	도	68	8	11	경상남도				
40	41	하동	양보	장암	536-2	도	301	17	18	정호기	장암리 754			
41	42	하동	양보	감당	257-2	도	5,024	358	357	국(농림축산식품부)				
42	43	하동	양보	감당	250-9	답	137	137	137	하동군				
43	44	하동	양보	감당	250-14 (250-4)	답	3,083	336	325	장정갑	장암리 674			
44	45	하동	양보	감당	250-8	답	57	57	57	하동군				
45	46	하동	양보	감당	250-13 (250-3)	답	1,442	116	108	정임기	감당리 799			
46	47	하동	양보	감당	250-7	답	69	69	69	하동군				
47	48	하동	양보	감당	250-12 (250-2)	답	1,700	117	110	정임기	감당리 799			
48	49	하동	양보	감당	250-6	답	191	191	191	하동군				
49	50	하동	양보	감당	250-11 (250-1)	답	3,360	404	351	김근태	감당리 96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부지사)	경기 의왕 포일동 487	
50	51	하동	양보	감당	250-5	답	211	211	211	하동군				
51	52	하동	양보	감당	250-10 (250)	답	809	407	350	추금순	부산 동구 좌전동 3-7			
52	53	하동	양보	감당	247-5	구	2,016	168	148	국(농림축산식품부)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대비)(4)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당초	변경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53	54	하동	양보	감당	248-8 (248-3)	답	2,338	16	6	손경균	감당리 220			
54	55	하동	양보	감당	248-7 (248-2)	답	2,419	72	51	김정덕	감당리 191	금오농업협동조합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153-2	근저당권
55	56	하동	양보	감당	248-6 (248-1)	답	1,820	22	19	김정덕	감당리 191	금오농업협동조합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153-2	근저당권
56	57	하동	양보	감당	248-5	도	164	16	16	하동군				
57	58	하동	양보	감당	240-38	도	13	9	8	배상윤	장암리 876-2			
58		하동	양보	감당	244-2	도	7	2		배상윤	장암리 876-2			
59	59	하동	양보	감당	1158	도	12,153	3	6	국(국토교통부)				
60	60	하동	양보	감당	258	구	5,188	142	116	국(농림축산식품부)				
61	61	하동	양보	감당	241-9	답	233	233	233	하동군				
62	62	하동	양보	감당	241-14 (241-6)	답	836	555	568	김용식	감당리 185-1			
63	63	하동	양보	감당	241-12 (241-5)	답	756	187	165	정영창	부산 남구 대연동 1475-32			
	64	하동	양보	감당	241-13 (241-5)	답	756		33	정영창	부산 남구 대연동 1475-32			
64	65	하동	양보	감당	241-8	답	65	65	65	하동군				
65	66	하동	양보	감당	241-7	답	20	20	20	하동군				
66	67	하동	양보	감당	241-11 (241-4)	답	1,934	230	221	김남식	장암리 887			
67	68	하동	양보	감당	241-10 (241-3)	답	1,266	1	2	박춘봉	양보면 진양로 985	한국농어촌공사 (하동군지부), 금오농업협동조합	경기 의왕 포일동 487,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153-2	근저당권
68	69	하동	양보	감당	258	구	5,188	119	110	국(농림축산식품부)				
69	70	하동	양보	감당	239-3	도	387	86	84	국(농림축산식품부)				

하 동 군 공 보

(69) 제 439 호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대비)(5)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 권 이 외 의 권 리		비 고
	당초	변경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70	71	하동	양보	감당	239-8	답	196	196	196	하동군				
71	72	하동	양보	감당	239-12 (239-2)	답	1,222	614	603	박춘봉	양보면 진양로 985	금오농업협동조합	경남 하동군 양보면 운암리 153-2	근저당권
72	73	하동	양보	감당	239-10	답	25	25	25	경상남도				
73	74	하동	양보	감당	239-11 (239-1)	답	278	29	25	정철영	진주시 강남동 245-11			
74	75	하동	양보	감당	239-7	도	3	3	3	경상남도				
75	76	하동	양보	감당	239-9	답	5	5	5	경상남도				
76	77	하동	양보	감당	239-6	도	9	9	9	경상남도				
77	78	하동	양보	감당	252-2	도	304	25	28	정형기	장암리			
합 계							179,422	13,664	14,17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

경남 하동군 양보면

연번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장암리	567-1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262.3	㎡	정승률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469-1				
			면벽	철근/콘크리트	16	㎡						
2	감당리	240-3	면벽	철근/콘크리트	2	㎡	손영근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220				
3	장암리	882	창고	블록/스레이트	9	㎡	정승률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246-1				
			담장	블록/조적	32	㎡						
			대문 지주	철근/콘크리트	0.72	㎡						
			대문	철재 H=2.0m, L=2.0m	1	식						

하동군 공고 제2015 - 793호

사두골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변경)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사두골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금회 보상구간에 포함되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11일

하 동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사두골천 정비사업
- 나. 위 치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162번지 ~ 459-3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소하천 정비 L=936m
- 라. 사업기간 : 2015. 05. ~ 2017. 05 [2015년 편입용지 보상]
- 마.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 : 붙임 편입조서 참조(변경)

3. 토지·물건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15년 09월 11일 ~ 09월 25일(15일간)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및 하동군 홈페이지
- 다. 이의신청 :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 055-880-2532~4)
- 라. 이의신청 방법 : 서면 신청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15년 10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나. 보상금의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다. 보상방법 : 협의 성립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압류 및 근저당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토지소유자가 해제 후 계약체결 원칙
-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현금(계좌) 지급

5.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나.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동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기 타

- 가. 토지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되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누락되었을 경우 실사를 거쳐 보상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참고로, 편입토지에 대하여는 지적법에 따라 분할 예정이며 예상편입면적과 확정면적은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나. 보상 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장소 및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개인별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 다. 토지 및 물건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함.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055-880-2532~4)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 동 군 공 보

(72) 제 439 호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대비)(1)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당초	변경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1	하동	북천	사평	1086	천	13,847	78	73	국(국토교통부)				
2	2	하동	북천	사평	1080	도	8,443	32	26	국(농림축산식품부)				
3	3	하동	북천	사평	1069	구	3,923	1,902	1,906	국(농림축산식품부)				
4	4	하동	북천	사평	459-4 (459-3)	답	2,148	120	134	김행구	진주시 신안동 782-38			
5	5	하동	북천	사평	461-10 (461-1)	답	2,189	230	244	김태선	서울강서구등촌동 628-17 공군연립 2-22			
6	6	하동	북천	사평	461-11 (461-2)	답	3,104	1,046	1,058	문도식	사평리 507			
7	7	하동	북천	사평	461-12 (461-3)	답	1,450	163	173	이금규 이득규 이형규	사평리 334 사평리 350 서울 용평구 갈현동 340			
8	8	하동	북천	사평	461-13 (461-4)	답	853	210	214	이상억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14			
9	9	하동	북천	사평	461-14 (461-5)	답	921	259	264	박영자	사평리 334			
10	10	하동	북천	사평	461-15 (461-6)	답	340	106	110	김기태	사평리 323			
11	11	하동	북천	사평	461-16 (461-7)	답	1,163	304	312	이상부	진주시 평거로 268번길 3(이 현동)			
12	12	하동	북천	사평	461-17 (461-8)	답	1,599	222	234	조성우	진주시 가좌동 660 주공210- 802			
13	13	하동	북천	사평	461-9	답	1,023	1,023	1,023	조성우	진주시 가좌동 660 주공210- 802			
14	14	하동	북천	사평	1070	도	1,012	136	140	국(농림축산식품 부)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대비)(2)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 고
	당초	변경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5	15	하동	북천	사평	460-11 (460-10)	답	1,270	199	8	강명남	사평리 321			
16	16	하동	북천	사평	436-6 (436-1)	임	1,302	279	121	강수관	진주시 상평동 268-62			
	17	하동	북천	사평	436-7 (436-1)	임	1,302		115	강수관	진주시 상평동 268-62			
17	18	하동	북천	사평	436-8 (436-4)	임	1,154	362	309	문도식	사평리 507			
	19	하동	북천	사평	436-9 (436-5)	임	2,000	616	545	이상억 강수관 황귀용 김현준 이상인 강봉규	사평리 334 사평리 411 사평리 335 사평리 336 사평리 338 사평리 330			
19	20	하동	북천	사평	362	답	46	46	46	김낙희	사평리 326			
20	21	하동	북천	사평	363	답	208	208	208	강필욱	사평리 330			
21	22	하동	북천	사평	363-1	도	30	21	19	강필욱	사평리 330			
22	23	하동	북천	사평	364-1	도	37	21	19	이영규	사평리 334			
23	24	하동	북천	사평	364-3 (364)	임	826	448	438	이상석	사평리 334			
24	25	하동	북천	사평	365-2 (365)	임	2,269	189	14	이상경	사평리 334			
	26	하동	북천	사평	365-3 (365)	임	2,269		175	이상경	사평리 334			

하 동 군 공 보

(73) 제 439 호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대비)(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당초	변경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25	27	하동	북천	사평	359-18 (359-16)	도	148	26	31	강필욱	사평리 330			
26	28	하동	북천	사평	355-8 (355-4)	도	15	9	10	곽우분	사평리 330			
27	29	하동	북천	사평	1220-5	천	7,028	3,175	3,175	국(국토교통부)				
28	30	하동	북천	사평	355-9 (355-6)	답	909	151	77	김육현	사평리 1058			
	31	하동	북천	사평	355-10 (355-6)	답			79	김육현	사평리 1058			
29	32	하동	북천	사평	355-7 (355)	답	2,115	314	317	정무식	부산 북구 구포동 1060			
30	33	하동	북천	사평	1260	도	1,338	137	138	국(국토교통부)				
31	34	하동	북천	사평	1239	도	3,901	156	152	국(국토교통부)				
32	35	하동	북천	사평	331-1 (331)	임	4,886	181	176	진주강씨회양공파종중	사평리 346	강상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11	근저당권
33	36	하동	북천	사평	332	임	595	361	355	진주강씨회양공파종중	사평리 346	강상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11	근저당권
34	37	하동	북천	사평	333-4 (333-1)	대	376	96	104	이영희	부산 북구 만덕동 841-15			
35	38	하동	북천	사평	333-3 (333)	답	429	255	269	홍기표	사평리 336			
36	39	하동	북천	사평	1099-1	도	77	3	4	하동군				
37	40	하동	북천	사평	1099-2 (1099)	답	320	101	109	김성조	사평리 36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대비)(4)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당초	변경	군	면				리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38	41	하동	북천	사평	1100	답	30	30	30	정명수	사평리 336			
39	42	하동	북천	사평	1268	도	76	9	10	국(국토교통부)				
40	43	하동	북천	사평	1101-2 (1101)	답	3,180	464	326	이무기	하동군 북천면 모성길 52-1	육종농업협동조합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15-1	근저당권
	44	하동	북천	사평	1101-3 (1101)	답			107	이무기	하동군 북천면 모성길 52-1	육종농업협동조합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15-1	근저당권
41	45	하동	북천	사평	1104-3 (1104)	답	3,142	108	9	강효식	서울 등대문구 장안동 346-26			
	46	하동	북천	사평	1104-4 (1104)	답			84	강효식	서울 등대문구 장안동 346-26			
42	47	하동	북천	사평	1123-1 (1123)	답	2,909	713	750	이무기	하동군 북천면 모성길 52-1	육종농업협동조합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215-1	근저당권
43	48	하동	북천	사평	1122-1 (1122)	답	995	313	310	정형	부산 동래구 연산동 2123			
44	49	하동	북천	사평	1121-1 (1121)	답	155	13	9	정형	사평리 345			
45	50	하동	북천	사평	1126-1 (1126)	답	1,676	285	305	정형	부산 동래구 연산동 2123			
46	51	하동	북천	사평	1127-7 (1127-4)	답	1,493	54	58	최강숙 김수규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30번길			
47	52	하동	북천	사평	1127-6 (1127-3)	답	417	3	5	최강숙 김수규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30번길			
48	53	하동	북천	사평	1128	답	83	77	83	김관성기 김관현두	사평리 326 양보면 우복리 337			
49	54	하동	북천	사평	1129-2 (1129)	답	400	56	60	정명수	사평리 336			

하 동 군 공 보

(74) 제 439 호

편입용지조서(당초변경대비)(5)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비고
								당초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0	55	하동	북천	사평	1130-4 (1130-2)	담	2,458	313	334	김철현	삼천포시 동금동 88-4 경남 APT 가-306			
51	56	하동	북천	사평	1130-3	도	187	18	19	하동군				
52	57	하동	북천	사평	1131-4 (1131)	담	662	10	11	김두현 김육현 김철현 김상철	사평리 1056 사평리 1058 삼천포시 동금동 88-4 사평리 91			
53	58	하동	북천	사평	1131-2	도	130	22	27	하동군				
54	59	하동	북천	사평	1131-5 (1131-3)	담	65	1	8	홍기표	사평리 336			
55	60	하동	북천	사평	1119-1 (1119)	담	836	172	1	김공성기 김공현두	사평리 326 양보면 우복리 337			
56	61	하동	북천	사평	1119-2 (1119)	담			158	김공성기 김공현두	사평리 326 양보면 우복리 337			
56	62	하동	북천	사평	1118-1 (1118)	담	1,501	294	268	이영태	사평리 347	하동신용협동조합	하동군 하도읍 읍내리 248-4	근저당권
57	63	하동	북천	사평	1117-3 (1117-1)	담	2,483	271	262	박상순	사평리 36			
58	64	하동	북천	사평	1117-4 (1117-2)	담	1,484	86	80	김원태	부산 동래구 남산동 101-1 금정아파트A-401			
58	65	하동	북천	사평	1170-1 (1170)	담	721	157	162	홍기표	사평리 336			
60	66	하동	북천	사평	1171-1 (1171)	담	2,119	89	76	홍기표	사평리 336			
합 계							104,067	16,743	16,476					

지장물건 조서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물 건 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면 적 및 수 량	단위	소유자	
	소재지						성명	주소
1	사평리	459-3	이팝나무	5년생	50	주	김행구	진주시 신안동 782-38
2	사평리	436-5	대나무	3년생	630	m ²	이상억외 6명	사평리 334 외
3	사평리	364	대나무	3년생	568	m ²	이상석	사평리 334
4	사평리	365	대나무	3년생	163	m ²	이상경	사평리 334
5	사평리	333-1	주택	블록/스레이 트	47.5	m ²	이영희	부산 북구 만덕동 841-15
			담장	블록	20	m ²		
6	사평리	332	대나무	3년생	139	주	진주강씨회양공	사평리 346
7	사평리	1100	감나무	3년생	3	주	정명수	사평리 336
8	사평리	1101	감나무	3년생	10	주	이무기	하동군 북천면 모성길 52-1
			비닐하우스		21.5	m ²		
9	사평리	1123	주목	5년생	30	주	이무기	하동군 북천면 모성길 52-1
10	사평리	1128	감나무	3년생	6	주	김관성기외 1명	사평리 326 외
11	사평리	1129	산사나무	1년생	10	주	정명수	사평리 336
12	사평리	1130-2	감나무	3년생	55	주	김철현	삼천포시 동금동 88-4 경남 APT 가-306
13	사평리	1170	감나무	3년생	35	주	홍기표	사평리 336

하동군 공고 제2015-794호

하동군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하동군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5년 09월 11일

하 동 군 수

1.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 하동군 제2생활폐기물처리장 조성
- 위 치 :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298-1 일원(대송저수지)
- 규 모
 - 면 적 : 총 105,006㎡(매립면적 40,075㎡, 폐기물처리시설 및 기타면적 64,931㎡)
 - 시설규모 : 소각시설 30톤/일(소각 여열 회수시설 포함), 재활용선별시설 10톤/일
- 계획기간 : 2015년
- 계획수립자 : 하동군수
- 계획승인기관 : 하동군청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하동군 생활폐기물처리장은 2004년 8월말 준공되어 2015년 9월 현재, 매립시설의 잔여용량이 약 3년여 정도 남아있고, 소각시설은 반입폐기물의 발열량 증가로 처리용량이 초과되고 노후화된 상황임.
 - 따라서, 본 계획은 장래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환경위생적 처리를 위해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298-1 일원’을 하동군 관리계획 상의 환경기초시설로 지정하고 제2생활폐기물처리장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5년 9월 14일~2015년 10월 14일(20일간)
- 공람장소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남해군청 환경녹지과, 남해군 설천면사무소
-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장소 비치)

3.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5. 9. 22(화) 14:00
- 장소 : 하동군 금성면사무소 회의실

4. 주민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5. 9. 14 ~ 2015. 10. 23(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
- 방 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 제출장소 : 상기 공람장소
- 제출내용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등 공사전반에 대한 의견, 당해 계획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저감방안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환경보호과(☎055-880-2584), 남해군청 환경녹지과(☎055-860-3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하동지역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국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하동군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위령사업을 정의
 - 나. 군수의 책무를 규정
 -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기준을 규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을 요구하는 사항

라.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범위를 규정

-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마.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880-2155, FAX 880-2159, dragonjow@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6·25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하동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하 동 군 공 보

(80) 제 439 호

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하동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
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게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

하동군 공고 제2015-796호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2. 제안 이유 :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안 제2조)
 - 나.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안 제3조)
 - 다. 보조사업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 제출(안 제4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3일까지 하동군(참조 : 행정과, 전화880-2155, FAX 880-2159, dragonjow@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사업 등)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2. 군정모니터활동 등 군정홍보사업
3. 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
4. 아름다운 하동을 가꾸기 위한 사업
5. 하동군 인구늘리기 캠페인 활동
6. 그 밖에 하동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제2조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84) 제 439 호

하동군 공고 제 2015-797호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년 9월 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목적 : 개간사업(전작 재배)
2. 사업내용 및 구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m ²)	개간면적 (m ²)	사업내용	비고
면	리						
계		4			4,914		
청암	중이	971-2	임	711	711	전작재배	
		972	전	116	116	전작재배	
		1098	임	99	99	전작재배	
		1099	전	238	142	전작재배	
		산125-2	임	27,093	3,846	전작재배	

3. 사업비 : 금67,870천원
4. 사업예정기간 : 2015. 11. . ~ 2016. 6. 30.
5. 사업의 효과 : 개간사업을 통하여 전작재배로 농가소득증대
6. 사업시행자 : 하동군 청암면 중이리 ***-* 정*세
7. 사업시행계획 열람 장소 : 하동군청 건설과(☎055-880-2514)

하동군 공고 제2015-800호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5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체계적인 업무추진 및 보조금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정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다.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4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실, 전화 880-2376, FAX 880-2369, jgkim777@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86) 제 439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등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자(개인, 법인, 단체)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농·수·임산물, 레저, 생태 및 자연환경을 소재로 한 축제 공연·행사·대회
2. 내국인 관광객 및 외국인관광객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업

3.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홍보에 관한 사업
4.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참가
5. 관광홍보 마케팅 및 관광기념품 개발 사업
6. 국제관광교류 활성화 사업
7.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 사업
8.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팸투어 행사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에 따른 지방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도 또는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회의·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
2. 정치 및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그 밖에 군내 관광진흥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관련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대상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
5.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등
6. 버스투어 운영
7. 관광브랜드 공모사업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내용과 일치하게 개정(안 제3조제1항, 안 제7조)
 - ‘군수 및 군 의원.위원회 → 군수’로 개정하고 관련 조항도 개정
 - 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미반영 된 부처명칭 정비(제5조제6항)
 - ‘행정안전부 → 행정자치부’로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감사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 및 군의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을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은 의회사무과”를 “의안의 소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u>군수 및 군의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u>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① <u>군수가 발의하는 의안</u>----- ----- -----.</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 ⑤ (생략)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u>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u>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p>	<p>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행정자치부</u>----- ----- -----.</p>
<p>⑦ (생략)</p>	<p>⑦ (현행과 같음)</p>
<p>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는 <u>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의안은 의회사무과에서 작성</u>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p>	<p>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u>의안의 소관부서</u>----- ----- -----.</p>
<p>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 ----- -----.</p>
<p>1. (생략) 2. <u>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발의안은 군의회 상정안에 첨부</u>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u>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군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u>하여야 한다.</p>
<p>3. <u>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u>할 수 있다.</p>	<p><삭 제></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2015-805호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6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조례 제2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소송담당자 및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의 차이 및 관계파악이 어렵다는 개선요구(법제처)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 당연하거나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소송수행과 관련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소송대리인 포함)과 포상금을 받은 소송수행자 외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으로 규정
- 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4조제3항)
 -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규정(제4조제3항)은 불필요한 규정으로 삭제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6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감사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96) 제 439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내용과의 대비로써”를 “내용과 비교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u></p> <p>1. · 2. (생 략)</p> <p>②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u></p> <p>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생 략)</p> <p>② <u>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써 결정한다.</u></p> <p>③ <u>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1. <u>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u> 2. <u>과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u></p>	<p>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u>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u></p> <p>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내용과 비교하여-----.</u></p> <p><삭 제></p>

관 계 법 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 또는 행정청의 장의 지정을 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가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認容)하는 판결
2. 국가나 행정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棄却)하는 판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15. 4. 2 제정된 「경상남도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지원 조례」에 따라 주부민방위 기동대 활동을 활성화하고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 기준(안 제4조)
 - 주부민방위기동대원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주부민방위기동대원의 동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주부민방위기동대원의 실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하동군(안전총괄과, 전화 880-2263, FAX 880-224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군수는 주부민방위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면별로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기동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군 :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2. 읍·면 :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읍·면 지역대

제2장 편성

제4조(편성기준) ① 대원은 기동대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부 중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1.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부
2.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주부
3. 민방위관련 전문지식·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부

② 대원(대장과 부대장을 포함한 전 대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정년에 달한 그 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편성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동대 편성 지원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편성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6조(조직)** ① 기동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동대의 대장 및 부대장은 읍·면 지역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원은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편성한다.
 ④ 기동대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사회의 민방위활동과 기동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 제7조(대장 임기)** ① 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대장직에서 물러난 사람은 다시 대장이 될 수 없다.
 ② 제11조에 따른 사유로 대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읍·면 지역대장의 선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임기는 전임 대장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8조(임원의 임무)** ① 대장은 기동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기동대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대원의 역할 및 임무)** ① 기동대의 역할과 임무는 평시와 민방위사태(재난활동 포함)시로 구분한다.
 ② 기동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점검,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활동,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2. 민방위사태(재난 활동 포함)시에는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역할 수행
 ③ 기동대의 주요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표 2에 따라 지역대별로 지휘반, 재난활동반, 생활안전반 등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 시 반의 조직·인원 구성 및 업무분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정원) 기동대의 정원은 읍·면 지역대 당 10명 내외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편성제외) ①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성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임기 만료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1. 대원이 사망 또는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대의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제13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대원의 신분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민방위활동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②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기동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2.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2조(동원) ① 기동대 동원명령은 대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동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원은 동원명령에 따라 민방위활동, 재난예방 및 복구, 생활안전예방활동을 인지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대원은 민방위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2. 소송분쟁 또는 다른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3. 그 밖에 기동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제14조(복무감독) 군수는 대장과 대원의 복무를 감독한다.

제15조(교육) ①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장 및 대원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복제)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복·민방위활동복 등으로 민방위복제 규칙과 운용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실비 지급 등 지원

제17조(실비 지급 등) ① 군수는 기동대의 활동 및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방위 업무(훈련 및 교육 포함)를 위하여 참여 또는 동원된 대원에 게 지원하는 별표 3에 따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실비
2. 기동대와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시 필요경비
3. 민방위복·활동복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민방위 및 재난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경비
5. 그 밖에 기동대의 임무수행(자원봉사 활동 포함)과 관련하여 부득이 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1년간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8조(사기진작) ①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기술경연대회, 수련회, 캠페인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및 포상 절차는 「하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5장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등

제19조(구성) ① 기동대의 상호간 정보교환, 대원의 친목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읍·면단위로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합회 구성은 읍·면 지역대장과 대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임무) 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동대의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2. 연합회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3. 민방위행정에 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4. 상급 연합회 연락 및 강조사항 준수

제21조(업무지원 등) 군수는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원의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본다.

③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연합회원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주부민방위기동대 주요 임무(제9조제3항 관련)

구 분	주 요 임 무
평 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2. 민방위창고 점검 3.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4.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 5.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 6.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 7. 비상연락체계 유지(주민신고 요원) 8.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9.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10. 그 밖에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민방위사태·재난발생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작전 필요 물자운반 노력 지원 2.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 3. 민방위사태 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 5. 비상급수·관리 지원 6. 사후관리 복구 지원 7. 재난 해제·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민방위 활동 및 재난 예방·복구 활동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

[별표 2]

주부민방위기동대 업무분장표(제9조제3항 관련)

반 명	분 장 업 무
지휘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동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운영에 관한사항 4. 대의 기율에 관한 사항
재난활동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방위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 3. 민방위사태시 현장수습·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 4. 민방위시설, 장비, 창고 등 점검 5. 민방위 교육·훈련 유도훈련 참여 6. 학교, 실전체험훈련장 등 보조강사 지원 7. 재난·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 8.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지원
생활안전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생활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우범지역 순찰,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 4. 안전캠페인 활동 5. 취약계층 인원·시설 등 안전 돌봄 지원 6. 심폐소생술 등 홍보 및 활동

[별표 3]

식비·숙박비 및 교통비의 지급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지급액	일반실 운임 정액	2등급 운임 정액	2등 운임 정액	정액	40,000	20,000

하 동 군 공 보

(110) 제 439 호

[별지 제1호서식]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

지 원 자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택: 휴대폰:	세 대 주 와 의 관 계	의
	직 업		학 력	
보유기술 및 기 능	종 목			
	취 득 일			
<p>위와 같이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자 (서명 또는 인)</p>				
구비서류 제 출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			

주부민방위기동대 지원 필증

지원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p>위의 사람은 년 월 일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하동군수 (인)</p>				

하 동 군 공 보

(112) 제 439 호

[별지 제2호 서식]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

(읍 면)

일 련 번 호	성 명	주 소	직 업	연락처	보유기술 및 기능명칭	편 성 연월일	비고
	생 년 월 일						

하동군 공고 제2015-8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5. 9. 16.

하 동 군 수

- 공고기간 : 2015. 9. 16. ~ 2015. 9. 30.(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내용

1. 제 목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2. 당사자	성 명	(주)운강 (주)제일부동산	주민등록번호 607-81-***** 605-81-*****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416 2층 ***호(양정동, 대원플러스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3, *층(연산동, 진보빌딩)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금611,160원), 과징금(2,050,620원)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5. 법 적 근 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과징금)		
6. 고 지 내 용	위와 같이 2015.8.22일까지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문의사항)	기관명	하동군청	부서명 민 원 과
	주 소	경상남도 하동군 군청로 23	
	연락처	☎ 055)880-2124. FAX 055)880-2078	

하동군 공고 제2015-810호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1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가. 제명 수정(안 제1조)
 - 당초 : 이 조례는 「공직윤리법」
 - 변경 :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 나. 공직자윤리위원 위촉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 당초 :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 변경 :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2항제3호)
4.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10월 8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감사실, 전화880-2034, FAX 880-2019, duck5021@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직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법 제8조제12항”을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직윤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하동군 <u>공직자윤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공직자윤리법</u>」 제9조 ----- ----- <u>공직자윤리위원회</u>의 ----- ----- -----.</p>
<p>제2조(구성) ① <u>위원회</u>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1. <u>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u></p> <p>2. (생략)</p> <p>②·③ (생략)</p>	<p>제2조(구성) ① <u>공직자윤리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 ----- ----- -----.</p> <p>1. <u>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능) ① <u>위원회</u>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p> <p>1. (생략)</p> <p>2. <u>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u></p> <p>3.·4. (생략)</p> <p>② <u>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u></p> <p>1.·2.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제3조(기능) ①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공직자윤리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p> <p>3.·4.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u></p> <p>③ (현행과 같음)</p>